

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규정(3-5-35)

제정일 : 2017. 06. 08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 의거, 건양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와 전문대학간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계교육과정”이라 함은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에 의하여 본 대학교와 전문대학간의 교과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2. “협력대학”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을 말한다.

제 3 조 (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) ① 본 대학교는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대학과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.

1. 연계교육과정 협약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서(별지 제2호 서식)

②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양교의 학부(과)·전공 명칭 또는 교과과정의 개편 등의 사유로 협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운영위원회 및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4 조 (연계교육과정 교과목 편성) ① 협력대학장은 본 대학교 전공(학부<전공>기초 포함)교과목과 연계가 가능한 연계교과목을 연계교육 운영협의회를 거쳐 12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.

②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.

제 5 조 (연계교육과정 교과목 이수)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대학에 연계교육과정 이수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개설된 연계교과목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교수 및 학생교류)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교수·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.

② 해당 학부(과)·전공 교수는 연계교육과정의 수업에 상호 참여할 수 있다.

③ 협력대학은 연계교육과정 학생들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기 연계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 7 조 (상호협력) ① 협력대학에서는 본 대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연계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편입학 지원자격) ① 본 대학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연계교육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및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2.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3.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

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 대학교의 당해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.

제 9 조 (모집인원)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%,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.

제 10 조 (전형 및 선발 등) ① 전형일정은 본 대학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한다.

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.

③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본 대학교 연계교육과정 학부(과)·전공이 통·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위원회를 거쳐 유사 학부(과)·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을 해당 협력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본 대학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부(과)를 불허한다.

제 11 조 (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)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연계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연계교육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3. 연계교육 관련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창의인재처장, 연계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해당학부(과)장, 협력대학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(논산, 대전)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직위원은 해당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12 조 (연계교육과정 운영협의회)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(과)는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연계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
2.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개발
3.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방법
4.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
5. 교수·학생의 교류 및 협력
6.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체결
7.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협의회는 해당 학부(과)의 전임교원과 협력대학 해당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, 회장은 해당 학(부)과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소관업무는 해당 학부(과)에서 관장한다.

제 13 조 (회의) ①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회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 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연계교육과정 협약서

건양대학교와 ○○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 및 양교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양교의 대학발전과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연계교육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,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.

1. 건양대학교는 본 협약서에 의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기회를 제공한다.
2. ○○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이 건양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진학 지도를 한다.
3.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계교육과정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다.
4.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연계교육과정 학부(과)/전공의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에 의한다.
5.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교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양교의 서면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6.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교가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건양대학교 총장

○○대학총장

<별지 제2호 서식>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서

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서

○○대학 ○○학과와 건양대학교 ○○학과는 양교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의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약에 따라 연계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약한다.

1. 시행년도 : 20 학년도부터
2. 연계 교과목 개설 : ○○대학 ○○학과는 건양대학교 ○○학과의 전공(학부<전공>기초 포함)교과목과 연계가 가능한 연계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12학점 이상 개설한다.

대학				건양대학교			
구분	연계 교과목명	학점	비고	구분	연계 교과목명	학점	비고

3. 선발인원 : 건양대학교 제3학년 입학정원의 3%,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.조정하여 선발한다.
4. 지원자격 : 대학 재학 중 연계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제출과 연계교과목 중 9학점이상을 이수하고, 학업성적 누계 백분율 성적이 80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.
5. 전형방법 : 선발인원과 지원자격을 만족할 경우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부(과)의 사정에 따라 입학전형 선발 전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.
6. 기타
 - ▶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관련위원회에서 정한다.
 - ▶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, 양교의 서면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20 년 월 일

○○대학 ○○학과장

건양대학교 ○○학과장

<별지 제3호 서식> 연계교육과정 이수 신청서

연계교육과정 이수 신청서

학 과 (전 공) :

학 번 :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위 본인은 우리대학과 건양대학교 ○○학과와 체결한 연계교육과정 협약에 따라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연번	연계 교과목명	학점	비고
1			
2			
3			
4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
20 년 월 일

신청자 :

(인)